

# 항만연수원 공동운영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17
제정일자	2005.11.1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05.11.11.제정 2014.02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항만산업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부산경상대학교(이하"갑")과 한국항만연수원(이하"을")간 항만교육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) 공동운영 본부는 부산경상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상호협력 내용) 아래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.

- 1. 항만관련 인력 양성 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
- 2. 학생모집에 관한 사항
- 3. 수업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· 교재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- 4. 산학협력을 통한 항만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
- 5. 교수와 학생의 현장연수, 현장실습 및 학생 취업에 관한 사항
- 6. 공동운영과정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
- 7. 교육연구용 시설 · 기자재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공동운영분야) 정규과정, 산업체 위탁과정 및 단기교육과정으로 구분, 개설할 수 있으며, "갑"과"을"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**제5조(교육과정)** 교육과정은 "갑","을"이 위탁 주체(항만관련 산업체)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 개발한다.<개정 2019.07.16.>
- **제6조(운영)** 정규과정, 산업체 위탁과정은"갑"의 학칙, 제 규정 및 산업체 위탁교육 세부 규정 에 의거 운영한다.
- 제7조(실습장, 기자재 지원)"을"은 학과 수업을 위해 필요한 실습장, 실습기자재를 "갑"에게 제공한다.
- 제8조(교수인력지원)"을"은 항만관련 정규학과 및 산업체위탁과정 학과 수업의 50% 내외를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교수인력을 지원한다.

#### 제9조(모집인원)

1. 산업체 위탁과정은 최소 20명 이상을 "을"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



# 항만연수원 공동운영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17
제정일자	2005.11.1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2. 기타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모집인원에 관한 사항은 "갑"과 "을"이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#### 제10조(경비부담에 관한사항)

- 1. 갑"은"을"에게 매학기 등록인원에 따른 수업료 및 실습비의 30% 해당 금액을 "을"의 제반 운영경비로 지급하며, 그 부담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강사시설 및 실습장의 장비, 기자재 사용 및 전기료
  - ② 신입생 유치경비(광고료, 홍보비, 유인물 제작 등)
  - ③ 신입생 모집을 위한 유치활동 경비를 보조(연수원 임직원)
  - ④ 기타 신입생 모집에 따른 제반 경비와 "을"의 수업유영에 따른 제반 경비
- 2. "갑"은 수업료 및 실습비의 70%의 해당금액과 입학금으로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.
  - ① 공동운영에 따른 전 강사료 및 본교의 제 경비
  - ② 신입생 추천 및 유치에 대한 격려금을 제공
  - ③ 산학협동장학금 지급: 재학생 1인당 수업료 및 실습비의 10%금액을 매학기 지급
  - ④ 대형실습과목의 경우 실습조교 활용비 보조
- 제11조(준용 규정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"갑"의 학칙, 산업체 위탁 세부규정, 기타 관련 규정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

# 항만연수원 공동운영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17
제정일자	2005.11.1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